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상정된 안건

-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검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검찰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반대한 사안 등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1항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장은 상임위원장으로 준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이 감사안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사 탄핵에 대해서……

○**위원장 정철래** 잠깐만요.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이 감사안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요 판판이 전부 기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9 대 0으로 완전히 기각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집회 내지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보면 일단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해서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민주당이 정하자는 건데 민주당의 입맛대로 기소하면 문제가 없고 만약에 무혐의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검사로서 성실의무가 위반된다라고 하면 아예 민주당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핵 사유 자체가 현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너무 무리한 탄핵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내는 것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있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계속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탄핵한 게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감사 요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과장들이 다 모여서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이런 행위들을 똑같이 했어요. 비판을 했습니다. 감사원 과장들이 모여서 비판한 요지는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탄핵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헌법상 기능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검사들도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낸 것인데 이거를 감사원에다가 감사 요구를 하면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감사원은 셀프감사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감사원 과장이 모이거나 검사들이 모여서 비판하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탄핵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탄핵이면 또 모르겠는데 너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탄핵 케이스 외에도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이미 법사위에 검사 4명, 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지금 또 탄핵하겠다고 조사 절차를 여기서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청문회 보셨겠지만 팩트도 다 맞지를 않아요. 신문기사 같은 거 붙여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솔직히 그 탄핵을 논하기 위해서 이 많은 법사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세비 낭비고요.

그때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검사들 월급 나가면서, 지금 탄핵소추가 남발 돼 가지고 월급은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못 하면 그거는 국가적인 손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러면 검사들이 월급을 반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게 업무 수행 중인 검사가 부당하게 탄핵을 당하는데 왜 월급을 반납해야 합니까? 오히려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해서 현법재판소에서 판판이 기각되는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해야지요. 저는 그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생각하고 논리가 뒤집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요구안도 사실 이게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기관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감사 요구를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법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요구안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린 의장은 의장이 맞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결국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법이나 소위, 상임위 다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의견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토론권을 먼저 드렸어요.

○**송석준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지원 위원** 해남·완도·진도 박지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 꼴로 가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께 있습니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협박하고 비난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지만, 그때도 여소야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예산 통과를 앞두고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에 비서실장인 저를 수차 보내서 의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여야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또 청와대로 초청해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에 가 계시는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려고 연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종된 책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감사 청구 발언을 했습니다. 자업자득한 거 아닙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할 때 전국 총경회의를 하고 경찰들이 반발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감사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탄핵이고 뭐고 법적 절차에서 했다고 하면 과연……

검사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주가조작, 명태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사 표시했습니까?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합법적인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들에게 하듯 그러한 잣대를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불행한 문제이지만 검찰들이 자업자득했다 또 감사원도 자업자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좀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곽규택 위원님 잠시 후에 의사진행하실 텐데 제가 초선, 재선 때 간사를 거의 전문으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보통 간사가 회의가 있으면 사전 회의 전에 의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의사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쭉 취합해서 보통 간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사들은 항상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 의사진행할 내용이 있으면 시작하면서 간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주로 합니다. 그게 간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에 관한 협의는 간사끼리 합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 질의할 내용을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빌려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은 가급적이면 간사에게 위임하거나 일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간사 간 의견 교환 그런 기회를 제대로 주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런 발언도 간사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곽규택 위원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석준 위원 간사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정상화를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곽규택 위원 지금 국회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이 자체가 너무 날림이어서 이게 과연,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한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또는 큰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상의 무슨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감사 요구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어제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감사요구안을 만들어서, 아마 내일 본회의에 이거 올리려고 갑작스럽게 또 법사위에 올린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한다면 지금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에 대해서 법무부나 대검찰청이나 일선 검사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그게 법사위에서 보기로 공무원의 집단행동 아니냐 하는 게 되면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해서 그 경위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법 위반의 가능성성이 높다 했을 때 감사 요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보나마나 뻔하겠지요.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내일 본회의에 올려야 되니까 빨리해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이렇게 급조한 감사요구안을 올려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법사위의 권위를 너무 스스로 떨어뜨리는 게 아닌지 정말 위원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검찰총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주진우 위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넣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자는 또 많습니다, ‘검찰총장 인청문회에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이런 감사 요구를 하는 거하고 연결시켜 보겠다, 스스로가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문 또한 향후에 문제를 삼겠다 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감사요구안은 국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감사 요구를 해도 늦지 않고요.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해서 급작스럽게 통과시킬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광규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국민의힘 광규택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은 위원장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감사요구안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할 일이 있으면 징계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먼저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현안질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건 순서가 안 맞잖아.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법사위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오더 받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국정감사 때 사실은 검찰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고. 그러나 여러 차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나 집단행동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를 넘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더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또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절차상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급작스럽게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위원님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원래 회의 통보를 받으면 ‘이런 일 가지고 회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심사숙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용민 위원** 국힘에서 지금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감 때 이미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있을 때 검찰청 내에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서로 옹호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외부로 흘러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국감에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왜 징계하지 않느냐’, 검찰총장에게도 ‘왜 징계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들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전혀 감찰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조했지요. 방조가 아니라 조장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어땠습니까? 주진우 위원께서 심우정 후보자에게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 뒤에 검찰동우회에서 변호사비 10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그런 문건까지 만들어 내면서 적극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동을 조장하는 행태였습니다.

제다가 감사원장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질의했습니다. 검사들이 이런이런 집단행동들을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특정 정당, 민주당을 대 놓고 욕하고 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습니다. 이미 다 질의를 했고 이미 다 지적을 했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위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이번에 중앙 검사장 등 탄핵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은 자기 검사장이 탄핵소추당한다고 하니까 부장 33명 등 차장, 부장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공분하고 보수 언론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그렇게 같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프로스에 글 하나도 올리지 않은, 이게 잘못된 결정 아니냐

고 이의를 제기하는 글 하나라도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자기 검사장을 국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분하는 걸 보고 과연 검사가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공익의 대표자가 맞느냐, 과연 이 사람들이 공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들의 신분을 존중해 주고 보수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특별 대우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창수 검사장 등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하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공범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돼 가지고 2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야당 위원들이, 특히 제가 국감에서 세상에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서 18개를 제시했는데 그 18개, 특히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 그 7초 주문, 그런 통정매매의 명확한 증거 이걸 보면 기소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처분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범들의 2심 유죄 판결과 관련된 수사기록 그다음에 세상에 드러난 그 18개의 증거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수사기록이 들어 있을 그 증거들을 합해 보면 이건 기소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했으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소추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 보자.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을 받듯이 국회가 탄핵소추로 기소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재판을 받아라 이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창수 검사장 등 3명의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사안과 달리 충분히 증거가 수집된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저는 강력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감찰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어요. 또 청문회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탄핵 기각의 한 사유였고 또 하나는 직무 관련 비위로만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일부는 직무 관련 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따져 보면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탄핵 기각된 것이 국회가 탄핵소추를 잘못했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직무상 비위만 가지고 탄핵 대상이라고 하면 검찰청법에 검사는 징계로써는 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파면할 수 있는 통로인 탄핵마저도 직무 관련 비위가 아니면 못 한다면, 예컨대 검사가 직무와 관련 없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의 자금을 한 10억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파면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는 직무관련성 관련해서 좀 넓혀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헌법재판소가 직권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섭 검사 건은 우리가 참작할 건이 못 돼요. 그래서 이 당연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게 타당한 반발인지 집단행위냐, 정치행위냐 따져 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지금 이건태 위원께서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반발을 안 했다 그러나 검사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반발한다. 하나는 사법행위고요, 하나는 정치행위입니다. 당연히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수사 내용을 모르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검사 탄핵이다.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옆에서 수사 과정을 지켜 봤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확인하고 하니 거기서 정치적 비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장검사, 차장검사도 했지만 평검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합니다. 왜? 아니, 민주당이 원하는 기소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결국은 이 탄핵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은 2000년, 2001년 사이에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최은순 장모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한 번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김건희, 최은순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 못 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계좌 추적은 별도로 두 차례나 김건희 여사, 최은순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것 강제수사 아니에요?

여러분은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다, 이게 부실 수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해야지요. 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 수사, 성남FC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당했습니까? 핸드폰 압수수색당했어요? 범인카드 가지고 조사받으면서 핸드폰 압수수색당했습니까,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 당했어요? 그것 다 부실 수사네.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달리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야지요. 하나는 안 했으면 부실 수사고 이재명 대표 핸드폰 압수수색 안 당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안 당한 건 정당한 겁니까?

○**박균택 위원** 그건 수사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유상범 위원**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봅시다. 자, 여기서 검찰의 판단이 분명히 지금은 아주 충분히 설명이 돼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내 주장하던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공범으로 갔던 전주라고 하는 손건희라는 사람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방조로 유죄를 받았다, 그러면 같은 김건희는 왜 기소가 안 되냐. 그리고 재판을 받고 해야 된다, 공범이다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요. 손건희와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건희는 소위 말하는 주범들과 직접 연관이 돼 있고 주범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별도의 전주 그룹으로 들어가 있고, 전주 그룹 중에서 기소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다고 해서 그

걸 가지고 유죄인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에서 그 계좌를 이용한 권오수의 범행이라고 지적을 했고 법원 판결도, 권오수에 의한 그 계좌의 이용을 권오수가 부인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조작 공범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그러한 범죄사실 가지고 김건희의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이와 같이 검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여러분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판단의 당부를 얘기할 수는 있지요, 여러분의 입장이 다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고, 우리는 옹호하고 민주당은 반대하잖아요.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탄핵을 하려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 없이 결국은 민주당의 뜻에 반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조폭이 하는 행동이랑 뭐가 다릅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계속……

○유상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왜요?

○유상범 위원 여기 위원장이…… 우리 토론하는데 위원장이 무슨 거기 평가할 게 뭐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유상범 위원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할게요.

○유상범 위원 다음 위원들 질문하지.

○위원장 정청래 아무 말 안 할게요.

○서영교 위원 밀렸어, 밀렸어.

○유상범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아무 말 안 할게요.

○유상범 위원 말꼬리 잡고 장난치지 말고……

○서영교 위원 밀렸어, 밀렸어.

○유상범 위원 뭘 밀리고 말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사람이 의사진행하면 되지.

○서영교 위원 아예 아무 말 안 하면 우리가 질의를 못 하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토론에 대해서 위원장이 거기다 평가하거나 말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한테 명령을 내릴 사항이 아니에요.

○박준태 위원 이렇게 유치하게 하실 거예요?

○유상범 위원 이게 뭐 하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잘해 보세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이건 말장난이고요.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진행하지 맙시다.

○유상범 위원 다음 토론 하도록 하세요.

- 조배숙 위원 말장난이지요.
- 주진우 위원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안건인데……
- 유상범 위원 아니, 내 토론에 대해서 위원장이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김승원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할 줄 알고 왜……
- 조배숙 위원 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 진행이 안 되지요?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이고, 또 말꼬리 잡지 말고 다음 의사진행 시키세요.

○조배숙 위원 말장난하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의견과 주의 주장은 충분히 보장을 한다, 다만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제가 개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평가 기준이 뭐니까?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말을 들어 보면 얼핏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한 것처럼 보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 이것을 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노린 검찰, 기우제 수사…… 727일 조사, 376회 압수수색’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한번 직접 대입해 보지요. 김건희 여사 727일 조사하시고 376번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두 건 가지고 55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검찰총장 때했던 말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불공정과 몰상식이지?

○유상범 위원 아니, 결국은 토론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청래 자,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제가 균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걸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위원장이 내 토론에 대해서 이리저리 평가를 하고 그걸 흐립니까?

○곽규택 위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토론이요.

○조배숙 위원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다고 제가 그대로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유상범 위원 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회가 부리우시면 다음에 법사위원장 하세요.

○유상범 위원 하나도 안 부리워요. 뭐가 부리워?

○조배숙 위원 부러운 것 없어요.

○유상범 위원 뭐가 부러워.

○곽규택 위원 아이고, 뭐 큰 감투 쓴 것 같네.

○유상범 위원 그것 완장 찬 거예요?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곽규택 위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토론이요, 감사요구안에 대한 토론.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의 검사에게 겨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검사,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관계된 검사들은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무혐의 치는 데 자기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주식을 모른다고 검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야기합니다. 'IT 불이 일었을 때 제가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라고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곽규택 위원 왜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웃음소리)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다 알지 않아요? 'IT 불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 김건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주식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검사, 범죄행위 아닙니까? 검사가 검사를 해야지 변호사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블록딜 하는 사람 있어요? 블록딜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무혐의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블록딜 할 줄 압니까?

○유상범 위원 주식을 안 해서 몰라요. 안 해요.

○서영교 위원 블록딜이 뭐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하는 주식이 블록딜이랍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블록딜을 한답니다.

○곽규택 위원 장외거래를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서영교 위원 그래서 블록딜을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블록딜을 하는 김건희 여사를 놓고 주식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검사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감찰 좀 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니, 법사위 열릴 때마다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감싸기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혐의 쳤는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치긴 뭘 또 쳐요, 무혐의를.

○서영교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고 있는데!

○유상범 위원 아니, 늘 말씀하셔 갖고 오랜만에 한 번 했는데 왜……

○서영교 위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볼게요. 손건희하고 김건희 이것 검사가 수사한 내용에 들어 있는 거예요. 손건희는 동원한 계좌가 3개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손해를 약 2억 봤어요. 그런데 김건희, 동원한 계좌가 5개예요. 수익만 엄마랑 해서 23억 봤어요. 그리고 손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유죄 인정한 특정 통정매매가 0건이에요, 0건.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몇 건입니까, 유죄 인정한 게? 48건입니다. 그런데 손건희는 징역형이 떨어지고 그리고 김건희는 무혐의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것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종호 범죄자하고, 아주 주포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한 핸드폰 내역이에요. 이것 사실조회해서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랑 도대체 몇 번을 통화했습니까? 사십여 차례 통화했어요. 왜 김건희 여사 핸드폰하고 PC를 압수수색 안 했냐고 물었느냐면 이런 주식은 핸드폰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어떻게 무혐의를 칠 수가 있지요?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불려 가서 수사할 때부터 이것은 검사 자격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려 가서 수사를 합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그런데 이 검사들 탄핵했더니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들고일어나면 됩니까?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됩니까? 검사가 정치인입니까? 경찰국 설치했을 때 류삼영 경찰 등 경찰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56명 감찰을 지시한 게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감찰하고 징계 내리고 때리면서 자기 부인은 이렇게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검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 검사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감찰하세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감찰해야지요. 감사원이 감사하라고 저희들이 오늘 의결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곽규택 위원 안건에 대한 토론, 의사진행이 아니고 안건에 대한 토론한다고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송석준 위원 토론권 드리려고 했더니 곽규택 위원이 반대하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오늘 법사위가 열린다 그래서 정말 어떤 중요한 안건인가 해서 제가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와 보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민생을 살필 따뜻한 예산을 제대로 잘 챙기고 서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구석구석 약자들에게 온기가 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우리 국회가 자기들에게 미운 국가기관들을 그야말로 난도질한, 민생을 챙겨야 될, 민생 범죄를 막을 검찰청 또 국가기관의 직무감찰·회계부정 이런 것 회계검사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일해야 할 감사원의 예산 다 난도질하고 이런 잘못된 예산…… 심지어 요즘 폭설 피해가 큰데 재난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긴급 대비 예산을 갖춘 예비비조차도 잘라 낸 이 감액 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만행이 예결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정말 제발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법사위 안건은 검사 탄핵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감사 청구 아닙니까? 도대체 각종 범죄사건 수사에 바쁜 검사들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으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한 이유가 뭐예요? 이번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탈탈 텐 것 아닙니까. 온갖 검사 역량 동원해서 털었는데 혐의가 없던 것을 그나마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하다 하다 못 한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까지 해서 다 엄정하게 검찰 수사 마친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로 끝난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또다시 담당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제대로 수사도 못 하다가 그나마 이 정권 들어서 공정한 수사를 소환조사까지 해 가면서 한 것을 갖고서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소위 김여정 하명이나 따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실 거예요, 누구 말을.

○김용민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무슨 북한 지령이야.

○곽규택 위원 다른 위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박은정 위원 북한이 왜 나옵니까, 북한이.

○조배숙 위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이 수행하는 일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또 누구를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북한으로 가요, 그냥!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송석준 위원 참 기가 막혀도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김용민 위원 북한 좋아하면 북한으로 가세요!

○조배숙 위원 누가 가요!

○김용민 위원 위원님이 가시라고요!

○주진우 위원 북한은 본인들이 가야지요.

○송석준 위원 북한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북한 지령을 듣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아니면 우리의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 말씀 듣고 하는 겁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이번에 이렇게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차장·부장, 핵심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면, 중앙지검은 1000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같이 일하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민생 범죄 해결을 위한 그 기관을 마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민생을 쟁겨야 될 국회가 이렇게 민생 범죄 그것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막아야 될 검사를 마비시켜 놓고, 검찰청을 마비시켜 놓고 그게 국회의 일이라고 합니까? 바로 국회가 탄핵받을 짓을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탄핵의 명분인 공익에 반하는가’ 그렇게 막 집단 반발하니까 이번에 감사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원장 이번에 탄핵하겠다고 얘기했지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탄핵하겠다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 무슨 저의가 있는 거지요? 저의가 있어요.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면 대행을 하는 분이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 조은석 아니면 김인회 이분이 대행한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치밀하게 기획된 소위 의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전현희 위원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송석준 위원 멀쩡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그 대행을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 의뢰한다는 거예요.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이 대행하는 감사원에 검사들을 감사 의뢰하겠다, 이게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못된 짓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승원 정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 국회의 행태는,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을 통한 조폭보다도 더 비열하고 흉악범보다도 더 흉악한 헌법기관 국회의 범죄적 일탈행위가 지금 바로 이 법사위에서도 방치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점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또 정청래 위원장을 대행하는 김승원 간사님……

○박은정 위원 끝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승원 정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정말 우리 법사위부터 정신 차리고 이러한 일탈행위 중단합시다.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잠시만요.

송석준 위원님, 앞의 민주당 위원님도 보시고요. 김여정 발언 부분은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속기록에 꼭 남기셔야 됩니까? 김여정 발언 부분은 속기록에서…… 취소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취소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승원 고맙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요.

○김용민 위원 제가 더 먼저 들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시면……

○김용민 위원 아니요, 저 토론.

○위원장대리 김승원 아, 의사진행발언이셨습니까?

○박은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참 별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민생 언제부터 쟁겼습니까? 검사만능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사면 다 됩니까? 정책

도 되고 경제도 하고 민생도 챙기고 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도 하고요. 도대체 검사가 못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예 그냥 전 국민을 검사로 만들지 그려세요, 그러면.

게다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했다고요?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당해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조사받고 왔는지 조사하고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행태를 저질러 놓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했다고요? 참, 이것 진짜…… 저희가 이런 토론이 어디까지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송석준 위원 방문조사 하셨어요.

○김용민 위원 자, 봅시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왜 저렇게 검사들을 옹호할까, 그리고 정권은 왜 이렇게 검사들을 어떻게든 어떻게든 봐주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를 옹호할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정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만들다가 제가 범죄 혐의 두 장 쓰고서 포기했습니다. 쓰고 있는데 범죄 혐의가 계속 나와요. 무슨 의혹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까? 명태군 씨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요.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또 엄청난 의혹 터졌더군요. 김상훈 정책위의장, 어제 무슨 청탁하다가 걸렸지요. 범죄집단 아닙니까, 거의 여당이? 여당과 정부가 범죄집단이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옹호하는 거지요. ‘우리는 봐줘라’, ‘우리 수사하지 마라’, 지금 이런 꼴 아닙니까?

○송석준 위원 아니, 의혹이 다 범죄예요?

○김용민 위원 법사위에서 지금 우리가 검사들 옹호하는 이런 것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박준태 위원 김용민 위원님, 말 좀 가려서 해요. 상대 정당 원내대표한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용민 위원 또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치검사들이 아주 등용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땠습니까? 법사위 국정감사 때 이 자리에 나와서 대놓고 정치행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정치검사 길을 계속 걷다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게 모범사례였는지 검사들이 지금 열심히 정치행위 하려고 하고 정치 등용문으로 이 법사위장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발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사들이 자기 사건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정치 등용문으로 사건을 악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제대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까 감사원에 감사 요구해서 제대로 감사받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직자가, 행정부 공무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집단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나무라야지, 국회가 그 정도는 나무라고 경고를 해야지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법에 있는 절차대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요. 문제 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자는 것인데 왜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송석준 위원 감사원 특활비 다 잘라 놨잖아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를 편드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탄핵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요? 이미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가 훼손했습니다. 무슨 검사 입에서 이제 툭 하면 민주당 욕이 아주 수시로 나와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합니까? 이게 지금 정상 국가입니까? 미쳐 가는 국가예요. 검찰 하나만 지금 살아남고 모든 국민들이 검찰 밑에서 진짜 괴롭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국회라도 정신 차리고 검찰 바로잡아야지요. 검찰의 이렇게 집단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사례 한번 볼까요?

2006년에 검찰수사관, 검사가 아니라 검찰수사관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검찰수사관이 내부 통신망에 공무원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직위해제당했습니다. 왜? 정치적 중립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검사들은 대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당보다도 더 세게 민주당 욕하고 있는데, 더 정치적인 언동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요? 가만둬야 된다고요? 이제는 좀 제대로 벌할 것 벌하고, 제대로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법사위 나갈 때가 돼서 그런지 제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웃음소리)

감사요구안이고 저희들이 법사위니까요 저는 우선 법리에 충실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냐 아니면 부당하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사를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집단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그 의사표현 행위가 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

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집단행동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탄핵과 같이, 그리고 저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견 표명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감사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검사들의 이런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라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 요구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들의 감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검사들이 대상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될 감사원에 대해서 또 때마침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의결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고 논란이 되었던 특정 감사위원이 연속해서 내년 연말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당초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저런 계획하에 이런 탄핵소추 그리고 감사 요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계속되고 있고 또 검찰의 특활비는 삭감되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모아 본다면 지금 이 검사에 대한 감사 요구가 과연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러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됐던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해서 감사를 하고, 만약에 그에 따라서 또 위법이 있다고 이 많은 검사들에 대해서 또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탄핵소추와 같이 그 정당성, 부당성 여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명의 검사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참고삼아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교육부, 대통령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경찰에 수사 의뢰’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보니까 전교조에서 대통령 퇴진 운동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이런 투표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투표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했답니다. 기사 읽어 보면 ‘최근

전교조는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올렸다' 해서 안내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도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교육부가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에 맞추어서 본다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리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사들도 행정부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이것은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주장은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법령 위반에 대해서 검사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주진우, 박지원, 유상범, 이건태, 송석준, 서영교, 장동혁, 김용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로 발언 안 하신 분들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지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기시감이 듭니다.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할 당시에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 발표하고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수행한 감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위법한 감찰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이 모두 적법하다고 1심·2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 당시에 성명 발표하고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도 징계하거나 그 집단행동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책임지는 검사를 없었고 반성하는 검사들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은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인지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당시에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교사들을 모두 기소해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처벌받지도 않고 징계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불기소 관련해서 국민의 70%, 80%,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90% 이상이 그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허위 브리핑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기자님들 있을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기자들 상대로, 국민들 상대로 벼젓이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제가 감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었더니 의사소통의 문제다, 감찰하거나 징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검사들을 감찰하거나 징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지금 탄핵소추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을 왜 탄핵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헌법에, 법률에 다 탄핵으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가 검사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행정 공무원이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징계성입니다.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상 해임까지밖에 할 수 없고 파면을 할 수 없습니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중앙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부장검사들까지, 평검사 200명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면 가만히 둬야 됩니까?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은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하거나 수사받거나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좌시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어제 검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해서 감찰하거나 징계를 하기는커녕 국회에 나와서 버젓이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법무부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불러다가 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아까 곽규택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듯이 조만간 적절한 시기에 법무부장관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이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왜 수사를 합니까? 고발됐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 돈봉투 사건 조사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몇몇 의원들은 유죄를 선고 받았고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의 검사가 탄핵이 됐고, 그런데 탄핵 사유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4명의 검사에 대해서 2명은 청문회를 거쳤고 2명은 아직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의 힘을 빌려서 여기에서 제2의 법정을 만든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이유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은 과거 2013년도 경찰청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달에 민주당 전 의원이 고발해서 다시 수사가 됐고 그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했고 2021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에 대해서 여섯 차례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150명을 반복 소환했습니다. 면지털이식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 했습니다, 무혐의 종결 처분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검사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수사해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기소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권을 너무나 남발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탄핵권을 남발해서 삼권분립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침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저는 그런 우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이 행동은 입법부의 과도한 탄핵 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하지만 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과도한 행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났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도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라고 해서 성역이 아닙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성역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유로 감사 요구를 한다, 저는 검사의 이런 반발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한다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토론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발언을 한 번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검사 탄핵 입장이 보도가 되자 중앙지검 1·2·3차장검사 등 공동성명을 내고, 33명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11월 28일에는 대검찰청에서 입장문을 냈고 11월 28일 그날에는 다시 남부지검 차장검사·부장검사 16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11월 29일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11월 29일은 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그립니다.

정말 수사권 조정 이후에 민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야 할 검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행동, 공동행동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정말 가관입니다. 그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한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 또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남부지검 차장·부장들은 국회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한남용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이고 국회가 고유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번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또 탄핵 관련 청문회가 열릴 때 검사들은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 또는 권한행사를 방해했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검찰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이 이렇게 움직여서 회의를 하고 성명을 내는 데에는 중앙검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일정한 회의를 하고 여기에 성명을 내려면 적어도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또는 대검과 법무부에도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 사건은 중앙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탄핵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다면 자기가 당사자면 적어도 ‘나에 관련된 것이니까 회의를 하거나 입장을 내지 마라’ 이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가 열리자 정부는 류삼영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시작으로 감찰에 착수했지요. 그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페널을 들어 보이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쿠데타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당시 김대기 비서실장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를 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저는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또 다른 탄핵 사유를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마일리지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그리고 디올백 명품백 불기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더니 이번 자신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고일어납니다.

공수처 설치 이유가 뭡니까?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으니까 공수처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은 이렇게 무도해지고 마치 정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향해서 자기들 입장이 뭔지 정당보다 더 신속하게 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놔두면 안 됩니다. 본분을 잊고 사법 정의를 팽개쳤으면 그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민생수사 운운하며 국민을 불모로 내세우고 회피했다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역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검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행위를 조사하고 징계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고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진위를 밝혀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아까 토론 종결 동의 누가 하셨지요?

○박균택 위원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이 했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아니, 토론 기회 주신다면서요.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 등께서 토론 해당 동의에 찬성이 있으므로……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씩 다 들어 주기로 해 놓고서는 또 왜 이래?

○**곽규택 위원** 왜 갑자기 또 이러세요?

○**유상범 위원** 갑자기 또 바꿔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좀 계세요. 제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해야 하나 잠시 몇 분 더 듣고 토론 종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뜻이 있어서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위원장 제지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1건 하는 건데.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대부분 다 하셨어요. 하셨고.

○**유상범 위원** 아니, 한 번 더 해 주기로 했잖아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더 이상 들을 말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토론 종결을 건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박균택 위원님, 잘 들어 보세요.

○**박균택 위원** 같은 말 반복하실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박균택 위원님, 잘 들어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박균택 위원** 토씨가 달라지면 모를까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위원장 정청래** 오늘은 안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때는 의결할 것도 많고 토론할 것도 많아서 제가 속도감 있게 하는데 이 부분은 안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하세요.

○**곽규택 위원** 감사요구안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은 탄핵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감사요구안 자체가 내용적으로도 법사위에서 이런 감사요구안을 과연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지도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는데 부장검사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한 행위에 대해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부장검사회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고 거기에 소속된 부장검사들이 있는 그 검찰청의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그래서 소추가 되면 당연히 직무정지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아니고 공무를 위한 집단행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감사 요구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과거에 무슨 경찰 관련된 사례를 말씀하시던데 경찰서장회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찰서에 있는 서장들이 아니고 산재돼 있는 경찰서의 서장들 아닙니까? 그 서장들끼리의 회의체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뜻을 가진 경찰서장들이 갑자기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요구안에 보시면 세 번째 항목에 방조·조장을 한 법무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해당 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사라고 돼 있는데 기관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을 해 가지고 감사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방조·조장한 사람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뚱뚱그려 가지고 법무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해당 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사…… 그러면 감사원보고 법무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다 감사하라는 뜻입니까? 이 감사요구안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항목 좀 보시지요. 검찰동우회에 대한 감사까지도 들어 있는데 검찰동우회라고 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 있는 어떤 단체가 아니고, 검찰동우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무슨 모임이 아니에요. 검찰동우회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퇴직한 전직 수사관, 전직 검사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요구안에 넣어 가지고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딱 특정을 해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후보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감사요구안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6페이지 보시면 열한 번째 줄부터 ‘지난 9월 3일’부터 그 두 줄하고 ‘이후’까지 부분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 이 부분은 갑자기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원래 이 부분을 빼야 문맥이 맞아요.

그런데 요새 주진우 위원께서 민주당에서 잘못하는 부분을 따박따박 잘 지적을 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까지 문제 삼아 가지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국회의원의 이름을 넣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한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감사원에 감사 요구할 건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감사요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최소한 표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생략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요구안 자체에서, 물론 감사 요구한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장은 스스로 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은 이 감사요구안 문건 자체에 대해서도 몇 말씀 하셨고

또 위원장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물론 양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의 문구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항상 그랬듯이 위원장이, 예를 들면 체계나 자구·문법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꽝규택 위원께서 ‘사람 이름도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뚱뚱그려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도 기관감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고.

또 명단은, 사실은 제가 오늘 명단을 여기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검사들 서명하고 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여기다가 직접 다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법무부·검찰’ 이렇게 명기를 한 것은 직무 감독을 해야 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왜 이런 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하도록 내버려뒀는지, 왜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진우 위원님 국정감사 발언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도 검찰이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것 유죄가 났잖아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사실을 허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박은정 위원** 다투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선거법에 대해서 제가 논쟁할 생각은 없지만 선거는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리액션, 느낌, 반응 이런 것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협박이라는 행위를 말한 거예요, 거짓말로.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그 선거법 재판은 저는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2심에서 바로 잡힐 거다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 법사위에서 판결에 대한 판단 하지 마시지요. 이것은 잘못된 법사위 모습이니까.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법사위에서 채 해병 관련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법사위원들께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국정조사는 왜 참여하시는 겁니까? 저는 속기록 다 확인해서 법사위에서 채 해병 관련된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국정조사에 참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돈봉투 관련된, 민주당 돈봉투 얘기도 좀 하시던데 돈봉투 얘기…… 맞습니다, 통화 녹취가 수사의 시작이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20억 통화 녹취 공개 됐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수사 안 합니까? 이렇게 검찰이 직무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이 공기업에 인사 청탁하신 것은 느낌이었습니까? 인사 청탁하고 싶은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특활비 얘기도 잠깐 나와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마치 특활비 80억을 삭감해서 수사가 방해된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더 큰 수사비가 있습니다. 1270억 원에 이릅니다. 공공 수사비 34억, 국민 생활 침해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 공정성 저해 62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 형사부 등 수사 지원 879억 등 수사비 1270억 가까이는 보존되고 있다, 정부 원안대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통과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단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집단항명 아닙니까? 현정 질서에 대한 항명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검사장, 차장, 부장검사 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계속 현정 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찰동우회에도 의견조회 공문 등으로 발송해서 이렇게 마치 감사를,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고 탄핵소추를 방해하고 또 여럿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검사에 대해서 소송을 지원할 듯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제대로 된 지휘·감찰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감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당연히 입법부의 권능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혹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기관 자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요구안이 지극히 정당하고 꼭 감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이상 토론 종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 중에서는 박준태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간사, 박군택 위원님, 두 분 정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면 그냥 지금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군택 위원 포기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저는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 박준태 위원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하세요.

○유상범 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정청래 한 번 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한 번 더 해 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알았어, 알았어요.

○박준태 위원 오늘 전체회의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획을 했고 안건도 단독으로 상정을 했고 곧 있을 표결도 민주당 일방 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국회법에 협의라고 써 있지만 그동안 선대 국회는 사실상 합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민주당의 모습은 합의는커녕 협의 과정도 없습니다. 오늘 안건 또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겁박 시리즈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감사원장 탄핵해 가지고 감사원 업무 마비시키겠다고 하면서 무슨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합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지요. 얘기 나온 김에 감사원장은 왜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감사 열심히 했다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수사 열심히 했다고 검사장을 탄핵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받은 의원들 6명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요? 그래서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주 의심이 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국회 앞의 대로변에다가 그 사람들 누군지 플래카드로 이름 써 붙이고 싶은데 동료 의원들에 대한 배려로 참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받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지 본인 수사하면 다 문제 있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장 탄핵시킨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 33명이 업무망에 글을 썼지요. 글의 요지가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말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단체행동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경찰국 사태에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류삼영 총경, 당시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서장회의 강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규정한 복종 의무를 위반한 걸로 이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들의 글이 지휘 체계를 위반한 겁니까? 항명입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업무 마비가 초래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의견 개진하는 건데 이게 감사 대상이 된다고요?

검사들의 이런 행위가 지금 정치 중립 위반 이런 사안입니까? 이 사람들이 특정 정당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당함을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치행위에 해당합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입장 발표하고 성명 내면 그 사람들도 다 감사해야 됩니까?

집단행동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공무원법 제66조 보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 외의 일입니까? 검사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의기투합한 겁니까?

지금 중앙지검이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관할하고 1년에 1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이 조직의 지휘 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것을 그냥 손놓고 있습니까? 당장 일선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지연 이런 피해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말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민주당 하는 일에 토 달지 마라 이런 일종의 겁박이라고 보는 겁니다. 탄핵 사유도 없는 탄핵을 계속 반복하다가 실익이 없으니까 이제 감사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존중과 공존의 정치 복원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오늘 상정된 안건 스스로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제가 박준태 위원님한테 겁박한 적 있습니까?

○박준태 위원 저한테는 안 하시지요. 검사들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늘 겁박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위원님들이 박준태 위원님한테 겁박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검찰총장한테 겁박하고 법무부장관한테 겁박하고……

○위원장 정청래 겁박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발언권 정지당한 사람이 몇 번을 당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저도 겁박한 적이 없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겁박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박준태 위원님이 선거법 TV 토론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준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들을 겁박했다고요. 누가 나를 겁박했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검사들을 겁박한 적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박지원 위원 토론 종결 표결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오늘은 토론 종결 표결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토론을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까요 토론 종결 표결은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님 한 번 더 하신다니까 하시기 전에 그러면 김승원 간사님 3분만 하세요.

○김승원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렇게 토론을 길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이 심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 왔던 특권과 또 선민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검찰을 단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입니다. 검찰이 자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해 보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의사일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 집단행동인데요. 이런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많은 공무원들을 수사했고 또 기소했습니다. 또 법원도 법률에 의해서 대개 벌금형이었지만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검사도 공무원으로서 그와 같은 집단행동이 금지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으니 이러한 일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들의 이런 집단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집단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래서 검사들과 토론회까지 하셨던 그 대통령의 배려를 나중에 정치수사로 모욕 주고 결국 극단적인 결단까지 하게 했던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 갖고도 이렇게 반발을 하시니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잘 이해가 안 되고 역시 검찰과 어떤 유대 관계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 점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요즘 송년회 때문에 위원님들 지역 활동 많이 하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정치적으로 이상한 말 한 번 했다가 많이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 민간인도 그럴진대 국가의 녹봉을 먹고 사는 공무원인 검찰이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도 한참 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때 열린우리당 선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으면 좋겠다,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갖고도 그 난리를 피던 그런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민주당에서 난리를 피웠지.

○**김승원 위원** 국민의힘에서 세게 했지요.

아무튼 이런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검찰이 한두 번도 아닌 반복되는 이러한 집단 의사표시와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 요구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마지막 발언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이 감사요구안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행정실 직원들하고 문구를 살펴봤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실명이 들어가는 것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난 9월 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가 검사 탄핵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렇게 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요 세 번째 단락이네요.

‘지난 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에서 ‘답변함’까지 세 줄은 그냥 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 위원님들, 곽규택 위원님 요구를 100% 받아들여서 그렇게 두 단락은 하나는 빼고 하나는 실명은 빼고 그렇게……

○곽규택 위원 빼는 건 빼는 거고 반대는 할 겁니다.

○유상범 위원 곽규택 위원님 요구가 100%는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3항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됐다고.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래도 이런 법사위원장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즉각 수정을 하고?

문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처음 보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어요?

○김승원 위원 동의합니다.

○유상범 위원 본 위원은 절대, 이런 법사위원장 나도 처음이에요.

○송석준 위원 잘하셨으면 이렇게 고쳤을 리가 없지요. 잘못된 부분이니까 고치신 거고……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즉각 수용하는 법사위원장은 아마 여러분들……

○송석준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을 시정한 거고, 그것은 잘하셨어요.

○유상범 위원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실 필요가 있지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두 번째시니까 3분만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아니,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들여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까?

○송석준 위원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잘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잘한 건 잘했다고 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잘하셨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은 잘했다고 했지. 그런데 그것을……

○박지원 위원 원래 정청래답게 하세요. 갑자기 변하니까 우리가……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데 100%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깨알같이 나도 지적을 한 거지.

○송석준 위원 정청래답지 않지.

○장동혁 위원 정리하고 빨리 끝내지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것도 즉각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범…… 미안합니다.

유상범 간사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곽규택이랑 나랑 한꺼번에 들어왔네.

○김승원 위원 두 번째니까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5분 하세요.

○유상범 위원 5분 줘요.

○김용민 위원 여당 간사가 왜 그래요, 여당이면서.

○**김승원 위원** 이것도 여당 편만 너무 드시면……

○**유상범 위원** 어차피 일방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빨리하세요.

○**유상범 위원** 김용민 위원님, 이제 조용해졌지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발언 기회를 두 번이나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발언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장동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법리적으로 검사들의 의견 발표가 공무원 집단의 정치적 행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하고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위법이 없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과연 공익에 반하는지, 직무 기강을 저해하는지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돋기 위해서 그동안 집단행위 중에서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이 문제된 경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전교조 시국선언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정권 운영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파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014년도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제자들과 동료를 잊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와 같이 편향성, 당파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만 2013년도 전교조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 발표가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2015년도 전교조 경남지부 무상급식 중단 교사 선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16년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선언의 내용은 이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승만 건국론을 반영하여 헌법에 위배하였고 5·16 쿠데타를 슬며시 정당화시킨다고 하면서 강한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당파성, 편향성이 없다고 그래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2018년 전공노의 사법 적폐 청산 시국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승태를 비롯한 사

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엄벌과 사법적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제도 도입 등 사법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처리가 됐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인정되는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의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검사들이 검사 탄핵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민주당은 그것이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국민의힘과 많은 국민들은 그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 권력의 압박이다라고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탄핵권 남용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 강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각종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주장한 행위를 정치적 행위라고 하면서 감사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요구안 이것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감사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문구를 수정해서 지금 완성본이 나와 있으니까요, 유상범 간사님 보시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반대인데 볼 게 뭐 있어.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래도 보세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안건 의결 그리고 승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토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토론 종결 표결을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충분히 토론을 했잖아요?

○조배숙 위원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토론 결과 의견이.....

○김승원 위원 토론 종결 자체만.....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다음에 안건 처리 과정에 의사 표현을 반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론 종결은 그냥 하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토론 종결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예, 토론은 표결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중지를 모아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혹시 또 체계·자구를 고칠 사항이 있으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